

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소속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년 8월 12일, 김대일 의원 외 11명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8월 1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
(2022년 8월 25일 상정, 제안 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
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김대일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고부가가치 농생명자원으로 주목받는 대마(HEMP)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경북 대마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대마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대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- 경상북도 대마산업 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함(안 제6조)
- 경상북도 대마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에서 제9조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채식)

가. 본 조례의 제정은

-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마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됨

나. 주요 내용은

- 본 조례안은 목적, 정의, 도지사의 책무, 종합계획 수립, 대마산업 지원 등 본칙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
-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

용어의 정의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대마산업”이란 대마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과 연관되는 산업을 말한다.

⇒ '대마산업'과 관련한 상위법이나 광역자치단체 조례가 전무하여 관련용어에 대한 정의는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

대마의 이해

대마(Cannabis)는 환각성분(THC)의 함량에 따라 기호용 대마(마리 화나, Marijuana)와 산업용 대마(헴프, HEMP)로 구분

- 헴프(HEMP)는 국내 법적 정의는 없으나,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

<주요국가별 산업용대마(HEMP)의 정의>

- (미국) 건조중량 기준으로 THC 농도가 0.3% 이하인 Cannabis Sativa L.과 해당 식물의 부속을 포함(2014년 농업법)
- (캐나다) 꽃머리(미수정암꽃)와 잎에 THC 농도가 0.3% 이하인 대마식물(Cannabis plant) 또는 해당 식물의 일부(2018년 대마법)

- ※ (한국) HEMP에 대한 별도 정의는 없으나, 식품공전에서 Hemp라는 용어 사용
- (식품공전) 식품에 사용가능 원료 목록 : (명칭) 삼씨, (기타명칭) 대마(大魔)씨, Hemp, (학명) Cannabis Sativa L., (사용부위) 껍질(포엽과 외종피)이 완전히 제거된 씨앗(마인)

*삼(대마)씨앗 : THC 5ppm(0.0005%)이하, CBD 10ppm, 삼(대마)씨유 : THC 10ppm, CBD 20ppm

- 안 제3조는 도지사가 대마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함을 규정함
- 안 제4조는 ‘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종합계획’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, 각 호에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
 - ⇒ 제3항에는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안 제5조는 대마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각 호에 해당 사업을 제시함
 - ⇒ 제6호에 도지사의 판단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유연성을 제고함
- 안 제6조는 ‘대마산업 지원센터’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
 - ⇒ 지원센터는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보장하였으며,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
- 안 제7조는 ‘대마산업발전위원회’에 관하여 규정하고 각호에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명시함
- 안 제8조는 ‘대마산업발전위원회’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
- 안 제9조는 ‘대마산업발전위원회’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
- 안 제10조는 ‘대마산업발전위원회’위원의 업무와 관련된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하여 규정함
 - ⇒ 본 조례안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타 조례에 비해 상당히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실질적·효과적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최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대마 (HEMP)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마 산업을 경북을 신성장 농업 분야로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
- 우리 경북은 전통적인 대마 재배지로서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규제자유특구사업에 ‘경북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’가 최종 지정되어(2020.6.) 추진 중에 있으며, 농림축산식품부가 대마의 체계적인 산업화를 위하여 구성한 ‘대마 산업화 추진협의체’에서(2021.9.) 경북도 및 산하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

헴프규제자유특구 기대효과(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)

[산업 생태계 구축] 대마 재배자 - 치료물질 생산자 - 제품생산 기업 간 거래관계 형성
[연쇄적 민간 투자] 특구 사업자 및 관련 기업 투자
↳ 대마 기반 의료 목적 제품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
[일자리 창출] 특구사업자의 고용 창출,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
[대마산업 클러스터 구축] 섬유용 소재(노지재배, 삼베 산업), 대마 활용 의료 목적 소재 및 제품(스마트팜 재배), 산업 생태계 활성화

- 전 세계적인 농어업 개방화와 농수산물 소비 감소로 인해 기존 농업 생산품목 만으로는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, 대마산업은 이에 대한 획기적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음
-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우리도가 국가 대마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더욱 공고히 자리매김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조례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문제가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련부서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

5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박창욱 위원 질의 : 대마산업육성 시행지역이 6개 지역인걸로 자료를 보았다. 어느 지역인지와 언제 신청을 받았는가?
- 김대일 의원 답변 : 2020년 6월에 대마산업 관련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 받았다. 현재 안동지역 일대와 경산지역에서 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.
- 김종수 국장 답변 : 대마산업 특구는 과학산업국에서 진행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으며, 농축산유통국은 재배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. 현재 재배현황은 145호에 89ha, 9개 시군이 해당되며 그 중 안동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. 관련하여 지난해 8월 농식품부에 대마 재배관련 클러스터 사업을 요청했으며,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.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